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준오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서준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학교시설(체육관·운동장)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하고, 개방된 시설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한 조례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원 학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시설 개방률은 점차 감소 중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방된 시설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책임은 교육청이, 개방된 학교시설과 시민의 안전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해 학교시설 개방이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서울시 조례로 서울시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 관리인력,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이용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해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